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. 3. 10 선고 2020가단834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21. 3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 - 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ㄱ) 부분 기와지붕과 판넬지붕 차고 약 48㎡를 철거하고,
 - 나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, 10, 11, 12,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ㄴ) 부분 컨테이너 약 18㎡를 철거하고,
 - 다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3, 14, 15, 16,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ㄷ) 부분 컨테이너 약 22㎡를 철거하고,
 - 라.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내 건축자재를 수거하고,
 - 마.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,
 - 바. 2020. 11. 2.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,224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홍성욱

별지